

전국조합장선거 후보자 ‘윤곽’...현직 유리한 ‘깜깜이 선거’

전남 181곳·광주 18곳 등 총 199곳 대결구도 가시화
 21~22일 후보 등록...선거운동 내달 7일까지 13일간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후보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농협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뤄지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광주와 전남은 19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농협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8곳, 전남은 농·축협 140곳, 산림조합 21곳, 수협 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 등 188곳에서 각각 투표가 진행된다.

▲광주·전남 곳곳 대결구도 가시화

광주지역은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지역농협이 14곳 중 9곳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조합에서 새로운 인물이

선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임제한이 없는 9곳의 조합 중 4선인 전봉식 대촌농협 조합장과 3선인 한진섭 광주농협 조합장, 박홍식 광주비어농협조합장,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의 등의 도전이 예상된다. 전남에서는 담양지역의 경우 박요진 현 봉산농협조합장과 최창기 고서 현 조합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3선 제한에 걸려 조합장이 무주공산이 된 창평농협과 금성농협,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등 3곳에서 벌어질 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3선 제한 규정에 따라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될 광양 진상농협의 경우 전 광양시의원과 진상농협 전 전무 등 4명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해남은 현재까지 해남진도축협과 화산농협, 화원농협 현 조합장이 공식 출마

를 밝혔다. 영광군은 영광군수협과 영광농협, 백수농협, 영광축협 등 4곳의 조합장은 재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굴비골농협의 경우 현 조합장이 조합 사상 첫 연속 재선에 도전한다. 이번에도 ‘금녀의 벽’을 깨고 여성 조합장이 탄생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지난 제2회 선거에서는 고흥군 풍양농협에서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여성 조합장이 배출됐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 개선 없는 ‘깜깜이 선거’ 희비

조합장 선거 관련 법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깜깜이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기간이 별도로 없는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렵게 돼 있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축협 특성

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발이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조합장선거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21일~22일...13일간 ‘열전’

이번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22일까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조합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영농·어업활동 등을 직업으로 하고있는 사람들이다. 농협 측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21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을 선별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해에도 광주와 전남에서 6750명의 무

자격 조합원을 적발했었다. 선관위도 기부행위로 인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법위반 행위 근절에 나선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지수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정부는 6일 화주로부터 일을 받지 않고 면허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지임전문화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이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임만 하고 운송에 관심이 없는 지임전문화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지임전문화사들이 불법이나 탈세가 있을 경우 회사 면허를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운송회사가 지임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비율 일감을 차주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는다면 감찰 처분도 하기로 결정했다. 운송사가 차량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화주와 차주 본인 명의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성 의장은 “지임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를 구입해오면 번호판 대여 목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며 “또 차량을 10년 정도 쓰고 나서 교체비로 800~9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 두 목적의 돈이 법인 수익이 아닌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 가진 번호판을 개인에게 팔 때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해당 수익이 개인으로 간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성 의장은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한다”며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가 표준운임제로 이름이 바뀐다”며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가 계약할 때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앞으로 운송사가 일정 금액 아래로는 차주에게 덤핑을 못하게 하고, 화주가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주에게 계약할 때도 표준운임제를 적용토록 강제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약자인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처럼 표준운임을 내놓았다”며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서 약자보호에 앞서겠다. 앞으로 운송사가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가 생기면 현금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보증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제로 운송현장에 있는 차주들은 운송사가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부당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만 아니라 유가가 인상됐을 때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은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본인의 손해가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할 경우 적정한 운임이 강제되게 하겠다”며 “2시간 운행 후 휴식하는 걸 지키는 사람만 지켰는데 앞으로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하겠다. 화주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적 강요도 화주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일몰돼 사라진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였다. 최소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도입된 표준운임제는 유가와 운임을 연동시킨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유류비가 운임에 포함되게 했다. 아울러 다단계거래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주 운임 정보 제공 의무화 등 거래이력을 투명하게 하고 화물정보망도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추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를 방지한다. 정승호기자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